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 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법 제20조2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나. 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 및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1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다. 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라. 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본인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마. 전송 방법·절차, 전송 요구 관련 배제 법률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8)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시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7)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8)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9~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9)
- 전문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권자, 예비심사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요건 세부기준 심사 생략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1)
-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 지정시 조건부가, 변경승인, 재지정, 업무의 중단·폐지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2)

-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3)
- 지정권자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 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4)

사.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5)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유지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6)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영 제46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받았을 경우 전송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차.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1항·제4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업무위탁 사항 규정

타. 전송 요구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영 제62조의2제3항)

-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파. 규제 재검토 기한 설명(영 제62조의3제1항)

- 개정안에 의해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영 제48조의7제4항, 제60조의2제6항)

-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별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별표의 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하였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통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질병관리청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나. 다음 1) 및 2)의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2. 전송 내역의 기록·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

②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 전문기관(이하 “중계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제42조의4(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일반수신자 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해 생성·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

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정보
-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해당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제3자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에 따라 제42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일반특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정보주체는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미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일반특수 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 방법 등) ①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2.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 상호 식별

• 인증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제42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특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만 전송해야 한다.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 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⑥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라 건전한 개인정보 전송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⑦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접근수단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
자 또는 인증정보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
상 확보하는 방법

⑧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
하거나 건전한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
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 전문기관(「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
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
하게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⑩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

자의 경우 중계 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해당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⑪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제10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⑫ 보호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7(전송 요구 관련 배제 대상 법률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3. 「의료법」 제21조제2항
4. 「약사법」 제30조제3항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제2항
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 본인, 일반수신자 또는 일반특수 전문기관이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8.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9. 법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10.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중계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및 특수 전문기관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중계 전문기관은 중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자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 지정신청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5.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 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지정신청자가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 전문기관(이하 “일반 전문기관”이라 한다): 보호위원회 또는 지정신청자가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특수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지정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출 것

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나.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는 것

1) 중계 전문기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 원 이상)

2) 일반특수 전문기관: 자본금 1억 원 이상(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억 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

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4.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에 요청하여(보호위원회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제2호 외의 공공기관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지정신청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신청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중계 전문기관에 한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일반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 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변경승인 사실은 제외한다)

⑦ 중계 전문기관은 중계 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 전문기관으로의 이전

3. 업무 중지·폐지 예정 사실의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지

가.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나. 해당 중계 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다. 해당 중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⑧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 전문기관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5조의3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행 중인 업무의 중단
2.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 전문기관으로의 이전(중계 전문기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사실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의1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① 보

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전송자의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의 이행 여부, 일반수신자의 시설·기술 기준 충족 여부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10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다.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라. 제42조의3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

나. 제2호다목의 자료(일반특수 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의16(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록한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 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제42조의6제10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정정·삭제”를 “정정·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따른다”를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전송자는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 전문기관이 제42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 전문기관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의7제4항 중 “별표 1의4”를 각각 “별표 1의5”로 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6”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

비심사

나.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1.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제6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 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제62조의3제1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등에 관한 사항: 공포일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7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공

포일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를 각각 별표 1의5 및 별표 1의6으로 하고,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9조의4,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 및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42조의2제3호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6월 1일

②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제2조(결합전문기관 재지정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이하 “임시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제42조의1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시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유효기간”이라 한다)에 제4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유효기간 내에 지정권자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날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일반수신자 행위 원칙(제42조의6제6항 관련)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건전한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것 외에 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 연구·교육, 유통·판매 등 처리하는 행위
2.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6.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전송받은 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7.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8.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철회하지 않는 행위
9.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0.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11.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12.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1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 1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구 분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중계 전문기관 및 일반 전문기관	10억원. 다만, 지정신청자가 제42조의11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특수 전문기관	10억원. 다만, 지정신청자가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제1호의 경우에는 진료 목적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비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표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의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1. 중계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 나. 전송 절차 중단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다. 중계시스템 장애·오류 등 발생 시 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42조의12제7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는 행위
- 라. 중계수수료를 과도하게 측정하거나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마. 중계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는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및 특수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를 거부하거나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
- 바. 중계 업무 종료 후 정당한 사유(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 사. 중계 전문기관의 지위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중계 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 아. 중계 업무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자.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차. 업무의 중지·폐지 또는 지정취소에도 불구하고 수행 중인 업무의 중단·이전 또는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일반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가.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나.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보주체의 제3자전송요구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사.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자.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철회하지 않는 행위
- 차.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카.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전송받은 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 파.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 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거.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너. 지정취소에도 불구하고 수행 중인 업무의 중단·이전 또는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더.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특수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가. 제2호 각 목의 행위
- 나. 금전적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
- 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된 행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 · 방법 · 절차) ① · ② (생략)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 · 방법 ·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1항 본문에 따 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통지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정보전 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 다) 가. 질병관리청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

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
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
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 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

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

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자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

체 중 다음 각 목의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파법」 제10조에 따

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

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나. 다음 1) 및 2)의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신 설>

2)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
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
관, 법인 및 단체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
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
스템
2. 전송 내역의 기록·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
관을 위한 시스템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
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신 설>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

②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 전문기관(이하 “중계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제42조의4(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일반수신자 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

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
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
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
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
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
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
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
해 생성·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
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
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
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

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정보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

의 정보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

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
용량 정보, 청구정보 및 납
부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
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
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해당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
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
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
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신 설>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제3자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에 따라 제42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일반특수 전문기관”이라 한

다)에 대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정보주체는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
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은 미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가 그 내
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일반특수 전문기관에 대한 제3
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
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 일반수신
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
· 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

<신 설>

법·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 방법

등) ①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

하는 방식

2.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 상
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
식

4.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 상
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
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
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
해서는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제42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특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만 전송해야 한다.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
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
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 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⑥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라 건전한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⑦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접근수단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

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
정보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해 정
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
는 방법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
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⑧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및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처리
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
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
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

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 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⑩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 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해당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⑪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제10항

<신 설>

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⑫ 보호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운영 비용 등 전송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7(전송 요구 관련 배제 대상 법률 규정) 법 제35조의2 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3. 「의료법」 제21조제2항
4. 「약사법」 제30조제3항

<신 설>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제2항

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 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
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합리
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 본인, 일반수신자
또는 일반특수 전문기관이 아
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
구한 경우

8.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
해하는 경우

9. 법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
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
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10.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
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
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신 설>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중계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및 특수 전문기관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중계 전문기관은 중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신 설>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자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 지정신청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5.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 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지정신청자가 전송받으
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
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 전
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으로 한다.

2.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 전문기관(이하 “일반 전
문기관”이라 한다): 보호위원
회 또는 지정신청자가 전송받
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특수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
관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신청자가

<신 설>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지정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추 것

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나.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는 것

1) 중계 전문기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 원 이상)

2) 일반특수 전문기관: 자본금 1억 원 이상(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 기본 재산 또는 자본총계 1억 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4.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에 요청하여(보호위원회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보호

<신 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 의료전송 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제2호 외의 공공기관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지정신청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신청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
에 따른 재지정(중계 전문기
관에 한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일반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
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 보호
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
의 홈페이지에 게시(변경승인
사실은 제외한다)

⑦ 중계 전문기관은 중계 업무
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
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는 해당 중계 전문기관에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 전문기관으로의 이전

3. 업무 중지·폐지 예정 사실의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
지

가.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나. 해당 중계 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다. 해당 중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⑧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 전문기관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
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4에 따
른 행위를 말한다.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
는 법 제35조의3제4항 및 제8항
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
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
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2. 법 제35조의3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
할 수 있다.

1. 수행 중인 업무의 중단

2.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신 설>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
전문기관으로의 이전(중계 전
문기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조치를 한 사실의 정
보주체에 대한 통지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
정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의1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
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
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전송자의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
구의 이행 여부, 일반수신자의
시설·기술 기준 충족 여부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보
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
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
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10
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
역에 관한 자료

2.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
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에 관한 자료

다.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
료

라. 제42조의3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

<신 설>

료

나. 제2호다목의 자료(일반특
수 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의16(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일반수신
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
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
지원플랫폼에 등록한 정보전송
자,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 전
문기관은 제3자전송요구에 따
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
받는 경우 중계 전문기관을 통
하여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제42조의6제10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

----- 정정·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
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
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 . -----

-----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 요

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및 필

요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

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

②·③ (생략)

<신설>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
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
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전송자는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 전문기관이 제42조의
5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
는 경우에는 일반수신자 및 일
반특수 전문기관에게 법 제38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
구할 수 있다.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별표
1의5-----.

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
야 한다.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② (생략)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설>

----- 별표 1의5-----

-----.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별표 1의6-----.

제62조(업무의 위탁)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
합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

-----.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
정에 관한 예비심사

나.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
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
용의 확인

<신 설>

④ · ⑤ (생 략)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
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
부 확인

11.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
영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 전문기
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
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보유하고 있
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할 수 있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공포일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7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
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공포일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연 락 처	(02) 2100 - 3172